

별표 5.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1.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내부인건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분류5
디자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20.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설계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건설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분석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 전문서비스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종목) 분류 등이 명확하게 위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3.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의 별첨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등록공보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